

정보화된 군사시설관련 제기된 민원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신광식* · 김행조**

A study 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filed complaints resolved through analysis

Kwang-Shig Shin* · Haeng-Jo Kim**

요 약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법(1972년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등 개선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함께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으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이나 제도, 규정, 교리 등 다방면에서 전향적인 사고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 자료는 국방부 관련부서에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military Act (enacted in 1972) due to the complaint were filed. The first study to address complaints such as integrated systems provid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or with the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that should provide an instrument to win. Finally, the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and doctrine in many aspects including the lack of forward thinking, or shall be deemed to be lacking complementary aspects.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s a reference to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work is to provide.

키워드

Military facilities, military laws, complaints, Department of Defense, the Joint Chiefs of Staff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법, 민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72년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어 안보측면에서 적절하게 운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이 따른 지역의 급속한 변화로 끊임없이 민원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각종 지역사업 추진에 따라 제기된 민원은 관할부대가 개별적으로 심의하거나 상이한 협의결과에 불만이 점차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보호 관련한 민원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군사시설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1].

*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sksdsc@hanmail.net)

** 교신저자 :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kimhaengjo@kornu.ac.kr)

접수일자 : 2013. 11. 8

심사(수정)일자 : 2013. 11. 21

게재확정일자 : 2013. 11. 15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관할부대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자료를 수집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수집된 민원자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민원처리와 법규, 교리 등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면을 찾고자 한다[2].

II. 민원내용 분석

1.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2),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3]

1.1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정액

표 1. 총지가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정액 비율 (2003년 기준)

Table 1. Estimate the total percentage of land area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gainst(2003 based)

Area	Estimates total land (%) /	Area	Estimates total land (%) /
Seoul	20.3	Kang won	16.6
Busan	31.5	Chung buk	6.6
Dae gu	23.1	Chung nam	4.0
Incheo n	40.7	Jeon buk	2.3
Guang ju	39.5	Chonn am	0.8
Dae jeon	12.8	Kyung pook	2.3
Ulsan	0.9	Gyeon gnam	3.6

Gyeon ggi	27.2		
National		19.8	

출처 : Ganghangu, jeongchang but gwonohong, Reserve military-related compensation measures take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Report 05-2149, 2005.8 p.105.

우리나라 지역별 총지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가(추정액)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인천이 40.7%, 광주가 39.5%, 부산 31.5%, 경기 27.2%이고 서울도 20.3%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의 2020계획에 의거 부대이전으로 현재는 비율은 다소 다를 수 있다.[4]

1.2 의회입법 내용

표 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국회의원의 입법 제안 내용

Table 2. Reserve military-related legislative proposals in congress contents

Date	Some revision Protection of Military Installations	Proponent
2005. 6. 4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vicinity of protected areas baelteuhyeong current setting range from 25 km reduced to 15 km, change Sanctuary Sanctuary related administrative head of the counci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dditional	Other members of yijaechang 14
2005. 9. 9	Military Reserves Committee organized under the Prime Minister, including private scholars	Baksehwan of 34 members, including
2005. 12. 7	Of protected areas, including military mountain mountains when they met as amended by the maximum distance lines Sanctuary	Including 24 members of baksangdon
2005. 5. 26	Areas and roads authorized flight safety	And 11 members of sinsangjin

2006. 10. 10	Add to ban assault sentry areas	And 11 members of anmyeongok
--------------	---------------------------------	------------------------------

출처 : 국회, 법률의안(//defense.na.go.kr.index.jsp)

국회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2005년과 2006년도의 주요 활동내용인데 대부분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많은 보안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 외국의 군사시설보호법 실태

미국은 군 기지 및 군사시설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즉 1993년 미국의 군사시설 25%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기지개편 및 폐쇄위원회(BRAC)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용하였고, 주정부도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에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은 군기지, 탄약고, 통신시설, 사격장 등을 건설할 때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5년마다 심사하여 해제, 변경, 완화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습법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법이나 수용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 등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군용지의 90%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자위대 시설의 취득 등에 관한 훈령, 비행장 및 항공 보안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기지 사령 및 기지 업무에 관한 훈령, 자위대 훈련 시 제한 구역 설정 및 손실보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5]

3. 군사협의관련 민원검토

3.1 상급부대와 관할부대

표 3.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2005년)
Table 3.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2005)

Division	The number of received	Results of consultation			Results of consultation	
		Consent	Conditional consent	No Consent	Observance	No Observance
Defense / Joint Chiefs of Staff	210 (100.0%)	39 (18.6%)	170 (80.9%)	1 (0.5%)	200 (95.2%)	10 (4.8%)
Jurisdiction Military	13,744 (100.0%)	6,601 (48.0%)	4,098 (29.8%)	3,045 (22.2%)	9,896 (72.0%)	3,848 (28.0%)
Total	13,954 (100.0%)	6,640 (47.6%)	4,268 (30.6%)	3,046 (21.8%)	10,096 (72.4%)	3,858 (27.6%)

출처 : Ganghangu, gangsoyoung, Reserve military research management system and system improvem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Report 06-2349, 2006. 12, p.28.

2005년 자료에서 분석한 결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민원검토 내용은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조건부 동의 이상이 99.5%로 대부분 정부나 국회 등 대외기관의 영향력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관할부대의 민원검토는 조건부 동의 이상이 78.2%이고 부동의가 21.8%로 분석 되었다. 이는 관할부대의 민원검토 여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즉 민원처리 능력이 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비해 열악하고 민감하여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사료된다.[6]

3.2 수도권 및 경기지역

표 4. 3군사령부(경기도 : 2005, 2006, 2007년)
Table 4. 3field command(Gyeonggi province : 2005, 2006, 2007)

Division	The number of received	The results of processing			
		Consent	Conditional consent	No Consent	Etc.
Northern Gyeonggi	25,663 (100.0%)	12,194 (47.5%)	5,246 (20.4%)	5,983 (23.3%)	2,240 (8.8%)
Southern Gyeonggi	379 (100.0%)	27 (7.1%)	329 (86.8%)	4 (1.1%)	19 (5.0%)

gi					
Total	26,042 (100.0%)	12,221 (46.9%)	5,575 (21.4%)	5,987 (23.0%)	2,259 (8.7)

출처 : Seon Young Je and Kim Yun Seok and Yim Yeong Gu and Yang Wan Sik, "Analysis of military-related civil and military consultation system improvements",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p.12, 2008. 4

경기도는 행정구역의 21.75%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로 인하여 1,178조 2,546억원(1972년부터 2007년)의 소득손실과 5조 2,786억원의 지방세가 손실이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의 민원검토결과는 표 4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26,024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중 조건부 동의 이상이 17,796건(68.3%)이었고, 부동의 등 거부된 것은 8,246건(31.7%)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상급부대와 관할부대 조건부 이상 동의 78.2%보다 9.9%가 감소하였다. 이유는 경기도는 서부지역으로 파주공단과 인천광역시, 강화도 등 민감하고 어려운 민원이 훨씬 많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0일 이내가 1900건(7.3%), 30일 이내가 14,931건(57.3%), 60일 이내가 6,249건(24.0%), 90일 이내가 1,208건(4.6%)이고 90일 이상 초과가 1,754건(6.8%)이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불법건축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5년의 경우 군사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한 것은 총 39건으로 연천군이 20건, 포천시 14건, 양주시 4건이었다. 또한 군사협의를 준수하지 않는 건축물은 총 37건으로 연천군이 20건, 포천시 12건, 양주시 5건 등 갈등의 문제가 다수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

3.3 공군

표 5. 공군민원 접수현황(2003, 2004년)
Table 5. Air force civil registration status(2003, 2004)

Division	Documents	Internet	Visit	Phone	Total
2003	153	7,482	173	11,473	19,281
2004	209	9,970	277	11,264	21,720
Total	362	17,452	450	22,737	41,001

출처 : Defense Journal, 2005년 March, pp.54-55

공군의 2003년, 2004년의 자료는 표 5와 같다. 총 41,001건 중 2003년 19,281건, 2004년 21,720건으로 2,439건이 증가하였다. 이 중 인터넷이 2,48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SNS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주요 민원 내용을 보면 소음 188건으로 가장 많고, 재산권 32건, 비위나 고충 85건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집단민원

표 6. 집단민원 발생 사례
Table 6. Cases of collective complaints

Year	For complaints
1996. 8. 28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s for government land purchase requirement
1996. 12. 20	Accommodate the required military protection forest areas
1998. 4. 4	Protected areas adjacent to military military facilities accommodate requests
1998. 5. 21	Reasonable adjustments in military Reserves
1998. 12. 14	2 military headquarters - zone against military retreats solah
1999. 2. 6	Allow farming in the fallow mintongseon
1999. 4. 6	10 Fighter Wing Zoning nearby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damage control
1999. 11. 17	Military or alternative protection measures established regional building permit request
2000. 1. 3	K-10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Aerodrome flight safety relief requested areas
2000. 5. 8	Hwacheon, Gangwon urban development plan for the area specified, against expanding protected areas
2000. 5. 30	Hwacheon, Gangwon expand protected areas in the opposition, as administrative charge region switch request
2005. 8. 26	Farming is in mintongseon out whilst the local occupancy permit and request for compensation
2005. 11. 4	Administrative agency to accept the prosecution violated military construction change / re-request for consultation
2005. 9. 1	Comprehensive review of waste disposal request Cheorwon Consent

2005. 10. 28	Pazhou Complex Unjeong Consent promotion of business demand
2006. 3. 17	Reason for removal request Gimpo doing military facilities
2006. 5. 11	Parking area adjacent to Goyang ammo bag new request for consent
2006. 7. 25	Excessive fishing activity in the population of the county mintongseon Truth Suppression request
2006. 8. 18	Goseong, Gangwon residents toseongmyeon mechanized uni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collapsed inhabitants briefing
2006. 10. 10	Review of local surfers Cheorwon military reserve requirements
2006. 11. 6	Wonju Congress set one group against protected areas around the military Department of Defense submitted geonuimun
2006. 12. 1	Congress reduced military reserve yeoncheongun geonuimun Congress / DoD delivery
2006. 12. 7	Yangzhou Congress reduced military reserve geonuimun Congress / DoD delivery
2006. 12. 26	Goyang City Council resolution Congress reduced military Reserves / National Defense passed
2007. 2. 14	Gyeonggi-do militar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Proposition Reserve Collapse
2007. 4. 9	Choi, Sung Deokyang cat sanctuary regulations lawmakers greatly reduced the military urged
2007. 4. 14	Zoning Hanam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gainst concerns before military
2007. 4. 25	Army Ranger before expanding protected areas concerned local military facilities in Icheon
2007. 5. 2	Cheorwon two three four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gion changed to protected areas requires administrative charge
2007. 5. 29	Goesan protect residents against military
2007. 6. 25	For reduced military Reserves submitted a petition Parliament (Gangwon Governor)

출처 :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calm treatment Content([//defense.assembly.co.kr/index.html](http://defense.assembly.co.kr/index.html))
Korea Institute for Defense Seminar (a military facility with civil-military Reserves, 2007. 11. 13)

집단민원 발생사례는 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대민 피해는 정확하게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경기개발원(2008년)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의 피해는 약 71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한바가 있다.

민원쟁점을 보면 도시개발에 따라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체시설이 없거나 미흡하고, 군용비행장의 소음 등의 민원제기는 사실상 해결할 수 없으며, 전투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건설로 기존의 군사시설이 훼손되거나 관측과 사계가 제한되고, 전시를 대비한 거부지역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 등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마찰과 갈등을 할 수 밖에 없다.

군 주둔으로 인한 갈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 재산권 행사 제한, 도시미관 훼손, 교통통제 및 혼잡 정체, 소음 및 정신적 피해, 농업활동 지장, 지역이미지 훼손, 주변환경 오염, 하천 및 토양오염, 신체 및 건물피해, 농작물 피해, 재산상 피해, 지역정서 불안, 폭행 등과 같은 범죄를 들 수 있다.

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재난구조 및 재해예방활동, 군인들의 영농지원활동,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행사에 이용, 지역행사 지원 및 공동개최, 방문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가 안전, 중장비나 차량이용, 자매결연 지원활동, 청소년 교육봉사활동,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부대 서비스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5. 소결론

첫째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즉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앙민원심의위원회가 없으며 관할부대인 군사령부(군사민원심의위원회), 군단(군단민원심의위원회), 사단(사단민원심의위원회) 등 단계별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둘째 민원해결을 위한 조직과 인원 능력의 부족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조직과 편제를 보완하고 민원부서에 편제된 인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통일된 기준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하였다.

셋째 민원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미흡하였다. 즉 지역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주민들과의 마찰로 관계가 소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군 행사에 미참석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여 관계가 불편하였다.

III. 민원과 갈등해결 방안 제시

1. 민원을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첫째는 민·관·군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앙민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관할부대인 군사령부와 군단, 사단은 단계별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원해결을 위한 조직편제를 보완과 인원능력향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는 전담민원해결부서를 편제에 보완하고 전담민원해결부서 근무인원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 마련

첫째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의 능력에 대한 편제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각종행사를 통하여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정된 관련 법률을 제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쌍방의 대화를 통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민원은 해결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규나 규정, 교리,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항목이 다소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민원에 대한 처리회신에 차이가 발생하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항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와 연결하면서 함께 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첫째로 장병들의 거주하는 지역사회로 개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기된 민원 중 일부는 거주 주민은 많은데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적어 지방교부세 등 지원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다소 있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장병들이 지역주민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와 훈련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이다. 부대에서 잔파와 각종 훈련 등으로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군부대 자체적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된 좋은 분위기로 서로가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다. 어려운 민원을 해결한다는 자세에서 지역사회를 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지원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지역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크거나 혹은 사소한 문제발생에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선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각종 재해 상황이나 인제 등 문제점이 발생되면 솔선하여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민원의 상당부분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 론

현대사회는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쉬운 문제도 어렵게 전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이 점차로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 등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제기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에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만 관할부대에 제기된 민원은 해결능력의 부재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함께 한다는 분위기로 조성으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 군이 지역사회와 분리된다면 더욱 서로가 신뢰하지 못해 더욱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각종 축제나 행사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관련법이나 제도, 규정, 교리 등 다방면에서 전향적인 사고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군 관련 자료의 제한으로 수집된 자료 중 일부만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가 더욱 필요하였다.

참고 문헌

[1] Shin Kwang Shig · Kim Haeng Jo, "Defence and military facilities the previous business component research on the impact on resident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43-147, 2013.

[2] Shin Kwang Shig · Kim Haeng Jo · Kim Dong Hyun, "Relocation of troops to the preferences of the key factors study",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6, pp. 1500-1503, 2012.

[3] Shin Kwang Shig · Kim Dong Hyun,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real estate assets hel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1, pp. 181-183, 2011.

[4] Ganghangu, jeongchang but gwonohbong, Reserve military-related compensation measures take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Report 05-2149, pp. 105, 2005.

[5] Seon Young Je and Kim Yun Seok and Yim Yeong Gu and Yang Wan Sik, "Analysis of military-related civil and military consultation system improvements",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pp. 7-118, 2008.

[6] Ganghangu, gangsoyoung, Reserve military research management system and system improvement,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Report 06-2349, pp. 29, 2006.

[7] Oh Gwan Chi, Military reserves: economic loss and countermeasur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enior Researcher, pp. 7, 2008.

[8] Korea Institute for Defense Seminar(a military facility with civil-military Reserves, 2007. 11. 13)

[9] Shin Kwang Shig, "Depart of Defense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perty management on ways to mutual research",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4, pp. 573-180, 2011.

[10] Shin Kwang Shig · Kim Haeng Jo, "Study of Relocation of Military troops and local residents for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633-646, 2012.

[11] Kang Koo-Hwang · Park Hwan-Yong, "A Study on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Urban Areas",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Urban Public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 317, 2011.

[12] Ha Jung ho · Choi Min seub,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location Project of the Defence and Military Facilities", seoul venture university, PhD thesis, pp. 36-40, 2012.

저자 소개



신광식(Kwang-Shig Shin)

1985년 2월 사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1990년 8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이론행정 졸업(행정학 석사)

2010년 8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박사)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입지, 도시계획, 부동산보상



김행조(Haeng-Jo Kim)

2001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
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석사)

2005년 일본, 메이카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연구과 졸업(부동산학박사)

2007년~현재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08년~현재 공인중개사시험 정답심의위원

※ 관심분야 : 부동산정보, 부동산개발 컨설팅